

의안번호	2111543
의 퇴 인	김웅의원
회 답 일	2021. 09. 03.

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- 국가안전정보처의 설치 등(안 제2조·제4조·제5조·제6조·제7조·제9조)
 - 국내 정보 수집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정보처를 둔
 - 국가안전정보처장과 차장을 두며, 정원은 300명으로 하고 5개 이내의 지부를 둘 수 있음
 - － 국가안전정보처의 직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으나 대검찰청,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파견받을 수 없음

II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
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

III. 미첨부 사유

- 제정안은 국가안전정보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임
 - 경찰(해양경찰 포함)의 사무 및 직무범위에서 정보 관련 사무 및 직무를 삭제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

[표 1] 현행법과 제정안에 따른 정보수집 관련 직무의 변화

현행법	제정안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(경찰의 임무)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 2. 범죄의 예방·진압 및 수사 3. 범죄피해자 보호 4. 경비·요인경호 및 대간첩·대테러 작전 수행 5.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·작성 및 배포 6.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.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.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4조(경찰의 사무)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1. 국가경찰사무: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. 다만,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. 2. 자치경찰사무: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·교통·경비·수사 등에 관한 사무	제3조(국가안전정보처의 직무) ① 국가안전정보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 1.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·작성 및 배포 2. 범죄 또는 치안 정보의 수집·종합·분석·작성 및 배포 3. 국가 및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자료 수집
「해양경찰법」 제14조 제14조(직무) 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·구조·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·경비·대간첩·대테러작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. ②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·진압·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. ③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·작성·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. ④ 해양경찰은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. ⑤ 해양경찰은 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.	

□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시 공무원 채용이 필요한 경우의 인건비(보수, 기본경비, 기관부담금, 자산취득비), 사무실 임차비용, 사업비 등

□ 추가재정소요 추계를 위해서는 신규 채용 인원, 사업의 확대 규모 및 범위 여부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함

○ 추가재정소요액

$$= \sum_{t=2023}^{2027} \left[\sum_i (\text{채용 인원}_t \times 1 \text{인당 보수}_{i,t}) \times (1 + \text{기본경비비율} + \text{기관부담금율}_t) + \text{자산취득비}_{t=2023} + \text{사무실 임차비용}_t + \sum_j (\text{확대되는 사업}_{j,t} \times \text{평균 사업비}_{j,t}) \right]$$

이때, i 는 직급(1=정무직, 2=6급, ...), j 는 사업 종류(1=정보 수집, ...)

□ 다만, 신규 채용이 필요한 직급별 인원, 기존 정보수집 관련 사업의 승계 또는 현행 사업의 확대 가능성이 있으나, 신규 또는 사업 확대의 규모 등에 대한 자료 등이 없어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불가능함

- 경찰청은 치안정보활동사업을 수행 중이며, 2021년 예산안 기준 299억 500만원 편성
- (사업목적 및 내용)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·작성·배포와 그에 수반되는 사실확인 및 조사를 통해 각 분야의 다양한 사회갈등 요인 조기해결 및 범질서 확립에 기여
 -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위협 요인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역량 제고로 국민 생활의 평온 확보
 - 대화경찰관을 통한 불법·폭력 시위 억제 및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 정착
 - 정보장비 현대화 및 치안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확충, 안전 유지활동 강화
 - 국가안보, 사회 안정 저해요인 제거를 위한 신원조사 역량 강화
- 경찰청 이외에 법무부·외교부·통일부·국방부(안보사·정보본부·사이버사 등)·국세청·관세청 등 각 부처에서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

[표 2] 관계 부처의 정보수집 관련 업무 현황

부처	내용
법무부	법무에 관한 정보 등(「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9조)
외교부	국제정세에 관한 정보, 국외 안전정보 등(「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3조의2, 제24조의2)
통일부	북한 관련 각종 정보 등(「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1조)
국방부	군사정보 등(「국방정보본부령」 제1조의2)
국세청	탈세정보자료 등(「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1조)
관세청	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·결정 또는 검증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 등(「관세법」 제233조의2)

-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현 단계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어 동 제정안은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우므로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미첨부 사유에 해당

국회예산정책처	행정비용추계과
과장	임준기
추계세제분석관	이미연
연락처	02-6788-4661
	mylee@nabo.go.kr
